#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7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강대식 · 구자근 · 안철수

권영세 • 이종배 • 김형동

강승규 · 김예지 · 신동욱

조지연 • 배준영 • 김용태

임종득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 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등).

법률 제 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집된 기간"을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로, "소집을"을 "병력동원소집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

제74조의4 중 "소집된 기간"을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로, "소집을"을 "병력동원소집등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판정검사 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74 조의3 및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
런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	런 학업 보장)
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	
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	
서는 그 <u>소집된 기간</u> 을 결석으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
로 처리하거나 그 <u>소집을</u> 이유	<u>병력동원소집등을</u> -
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
	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
	<u>사</u>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
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	련 직장 보장)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u>소집된 기간</u> 을 휴무로 처리하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

거나 그 <u>소집을</u> 이유로 불리하	<u>병</u> 력동원소집등을	
게 처우하지 못한다.		